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1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 종전 고용직 공무원중 방법원이 지도원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정원을 감축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되 정년이 '98. 12. 31인 자와 '99. 6. 30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 12. 31인 자와 2000. 6. 30인 자는 종전의 정년보다 각각 6월 및 9월을 단축하도록 함
- 지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함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정년”을 “근무상한연령”으로 하고 “방법원”을 “지도원”으로 하며, “58세”를 “57세”로 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직기간)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6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에 따른 정원관리) 이 조례 시행이후 지도원이 퇴직한 때에는 그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원중 제3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 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년) 고용직 공무원인 <u>방범원의</u> <u>정년은 58세</u> 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 <u>지도원의 근무</u> <u>상한연령은 57세</u> -----
제6조(휴직) <u>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u> <u>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u> <u>한다.</u>	제6조(휴직) <u>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u> <u>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u> <u>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u> <u>휴직을 명할 수 있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로 한다.
<u><신 설></u>	6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 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